바른사회시민회의 Citizens United for Better Society
@FactBrief

CUBS FACT BRIEF | 2016년 8월 3일 | 발행처 바른사회시민회의 | 발행인 전삼현 | www.cubs.or.kr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⑥>

국회의원 특권 실상: '공직 선거' 분야(2)[1)]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이옥남)

국회의원의 공직선거 분야에 있어 특권 중 하나는 실제로 선거운동에 제한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의정활동(보고회 포함), 지역유권자 의견 수렴, 입법 활동 등을 통하여 평소에도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에 의해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되지만 인터넷에 의정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의정보고회는 집회・보고서・인터넷・전화 또는 축사・인사말 등 제한이 없다(【표 1】 참고).

【표 1】 의정보고서에 실을 수 있는 내용

실을 수 있는 것	실을 수 없는 것
◦ 의정활동과 관련된 사진. 정치적 소신 ◦ 의정활동이나 업적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 ◦ 의정보고서에 신년인사 문구 게재 -신년인사장을 따로 붙이는 것은 금지 ◦ 현직 의정활동과 관련된 과거 의정활동 일부 - 과거 의정활동이 주된 것은 금지	◦ 통상적 범위를 넘은 성장과정. 정치역정 ◦ 차기선거 공약. 지지호소 ◦ 다른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추천하는 행위 ◦ 생일축하 내용 ◦ 상업광고 ◦ 다른 사람의 인사문.추천사를 게재

※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4. 2)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인은 예비후보로 등록할 때까지 어떤 선거운동도 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 등록은 국회의원 선거일 120일전에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매년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매년 1억5천만 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표 2】 참고). 후원회로 모금하는 정치자금과 세금으로 지원받는 입법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용도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일부 중복도 있어 중복 지원 논란의 소지가 있다.

1) 본 시리즈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14년 발표한「국회의원 특권: 그 실상과 혁파방안」을 시리즈로 재구성하였음.

【표 2】 국회의원 정치자금 모금한도(연간)

구 분		선거가 없는 해	선거가 있는 해
국회의원 후원회	지역구	1억5천만 원	3억 원
	비례대표	1억5천만 원	1억5천만 원
국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후원회		1억5천만 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	1억5천만 원
지방자치 단체장 후보자 후원회		선거비용 제한액의 50/100	
대통령선거 후보자(경선후보자 후원회 포함)		선거비용 제한액의 5/100	

※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4. 2)

국회의원을 제외한 일반 정치인은 선거 120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회를 통하여 모금할 수 있으므로 총선을 위해 사실상 4년에 한번 모금하며, 모금액도 현역 의원의 절반인 연간 1억5천만 원이다.

또한 선거 분야에 있어 국회의원의 특권은 선거구 획정을 스스로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 41조의 선거구 법정주의를 근거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Boundary Commission)'를 국회에 두며, 외부인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안을 '존중'하기만 하면 된다. 공직선거법 제24조 10항에 의해 선거구 획정에 관한 결정은 국회가 한다(**【표 3】** 참고).

【표 3】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선거구획정 절차

구분	내 용
선거구 획정위원회	o 소속 : 국회. 비상설로 선임일부터 보고서 제출시까지 활동 o 인원 : 11인(여야대표와 협의하여 국회의장이 위촉) o 대상 :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및 선관위 추천자 중에서 위촉 (국회의원.지방의원과 정당 당원은 불가)
선거구 획정 절차	o 선거구획정위의 역할 -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선거구 획정안 마련 및 보고서 작성 - 선거일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 및 보고서 제출 국회의 역할 - 정치개혁 특위에서 심사.의결(수정 가능) - 법사위 및 본회의 심의, 의결(의결기한 없음) * 획정위원회 안에 대해 국회가 존중(공직선거법 24조. 기속력 없음)

※ 출처: 바른사회시민회의(2014. 2)

국회의원 외 기초자치단체인 시, 군의원의 선거구획정은 광역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24조에 의해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광역단체장이 위

촉하고, 동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 제출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중립적 위원회(혹은 정부산하 기구)에서 선거구 획정을 결정한다.

※ 국회의원 특권 시리즈 ⑦ :국회의원 특권 실상: '세비' 분야(1)